



Newsletter

2024 년 10 월호

제목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 개 시행령 개정](#)

예규·판례

○ 기획재정부

-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 국세청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 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4. 10. 29

Deloitte Anjin LLC
Japanese Services Group(JSG)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 개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 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 ~ 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 년 11 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 의 3)
 <내용>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 년 연장('26.12 월)
 <필요성>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 법인세법 시행령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법인령 §92 조의 2④)
 <내용>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 년 연장('27.12 월)
 <필요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조특령 §2)
 <내용>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3 년 ⇒ 5 년으로 확대(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 년)
 <필요성> '24 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 중 개정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부가령 §19 의 2)
 <내용>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 만원)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진작(금년 추석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중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중부령 §4 의 3)
 <내용>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 년 연장('27.12 월)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non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예규·판례

[기획재정부]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8.14.)

■ 질의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 조제 8 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 23 조제 1 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757, 2024.3.19.)

■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는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열·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8 조에 따라 열·전기 에너지의 사용자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일부(공사부담금)」를 받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투자에 지출하였음

회신

2022 과세연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제 3 호 나목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 37 조 제 1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apanese Services Group(JSG)

저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세계적인 조직인 Deloitte Touche Tohmatsu LLC(이하 “DTT” 또는 “딜로이트”)의 Member Firm 으로서 DTT 의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다른 Member Firm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고객의 Needs 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법인은 DTT 의 일본기업을 위한 전문가 서비스조직인 JSG(Japanese Services Group)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조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SG 는 일본어에 의한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SG 서비스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한국의 일본계기업을 위한 서비스\(일본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Takeda, Yukiko / TEL 02-6676-1038 / ytakeda@deloitte.com

Seo, Jung Wook / TEL 02-6676-1871/ juseo@deloitte.com

감사합니다.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안진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